

의안 검토 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직할시장
2. 건 명 :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4. 12.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진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4. 12.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4. 12. 7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 12. 12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현행 대전직할시 물품관리조례중 비품구분기준, 관서당경비 물품 품의요구, 불용품매각 감정평가기준 및 물품관리 법정장부의 축소 등을 조정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가.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는 물품 품의요구서 작성이 생략토록된 단서 조항을 삭제함. (안 제8조)
- 나. 현행 불용품매각 감정평가기준이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으로 함. (안 제17조 제4항)
- 다. 물품관리 법정장부중 소모품 대장 삭제 (안 제24조 제1, 2항)
- 라. 현행 비품기준이 내용년수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내용년수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함. (안 별표 1)

3. 검토 의견

본 안건은 현행 대전시의 물품관리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품구분 기준을 조정하고 관서당경비의 물품품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불용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상 현실성이 없는 소모품 대장정리 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각종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품의요구서에 의해 요구를 해야 하고, 다만 관서당경비는 주관과의 자율에 의하도록 예외로 하였는데,

무분별한 회계운영의 통제와 회계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앞으로는 관서당경비도 물품구입시 제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임. (안 제8조)

둘째, 불용물품의 매각에 있어서 불용처분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을 5백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불용품에 대한 구매력 저조로 물품평가에 따른 감정수수료만 소비되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어서 이의 개선측면에 조정할 것이라 하겠음.

셋째, 물품출납원이 비치 정리하여야 할 법정 장부중에 관리의 필요성이 없고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임. (안 제24조)

그리고 안 제5조와 관련한 별표 1의 비품구분 기준에 있어서 현행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이면 비품으로 보았는데 그동안 물가인상이나 비품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1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 하겠음.